

2023년도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1.(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76건(안전번호 제2023-50367호~5124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50367호는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 등을 이용한 사안으로, 민원인 게시물의 이미지와 심의 대상 게시물의 대표 이미지는 동일한 소재 및 구성으로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별개의 사진으로 불법복제물로 볼 수 없는 점,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는 시정권고 대상으로도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는 게시자 본인이 출연한 방송물을 이용 중인 사안으로, 게시자가 방송에 출연할 당시 방송의 권리자로부터 영상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50372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0434호~50422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50423호~50440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는 웹하드, 카페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50446호~5124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3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3-111회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위원님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음.
- B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3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3-50367호~5124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

호 제2023-50367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제품 설명 이미지를 무단 이용중이라는 취지로 신고된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5037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대표 이미지는 민원인 게시물의 사진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의 손모양, 접시의 모양, 고기 및 면의 모양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유사하게 촬영 및 편집되었을 뿐 실제로는 별개의 이미지로 보임.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 원본 및 편집화면을 근거로 민원인이 본인이 판매중인 제품의 대표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이미지와 심의대상 게시물의 대표 이미지는 동일한 소재 및 구성으로 촬영되었을 뿐 실제로는 별개의 사진임. 서로 유사할 뿐인 두 이미지가 각자 다른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다면 보호원의 심의대상인 불법복제물이 아님은 물론, 선후관계 및 의거관계를 따져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근거자료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임.

즉 제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불법복제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본건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민원인이 제2023-77회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유가 무엇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부결 사유 중 민원인이 권리자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본인 작성 사실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함.
- A 위원: 기존의 심의 결과 중 '민원인이 권리자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 수궁하기 어려웠다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민원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진 원본 및 편집화면을 근거로 민원인이 해당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었음. 나머지 부분은 심의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두 개의 사진이 별개의 저작물임에도 민원인이 신고한 사유는 무엇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두 개의 사진이 별개의 사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유사함. 일반에서는 저작권 침해 안에서 불법복제와 표절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A 위원: 민원인의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민원인의 이미지를 일시 이용하거나 유사하게 이용한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보호원이 확인 가능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별개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물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36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36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 등을 이용한 사안으로, 민원인 게시물의 이미지와 심의대상 게시물의 대표 이미지는 동일한 소재 및 구성으로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별개의 사진으로 불법복제물로 볼 수 없는 점,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는 시정권고 대상으로도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를 통하여 방송 ‘● ● ●●●’와 ‘■ ■ ■ ■’ 각 한 회 전체 분량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4건임.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게시자의 프로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 본인이 출연한 방송을 홍보용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출연자가 권리자(방송사)와 방송 출연 계약 당시 자신의 출연분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일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음. 만약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이용이라 하여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①해당 방송의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게시자측이 출연한 부분임(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②저작물을 오로지 공중의 감상에 제공할 목적보다는 자신의 정치, 사업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③이러한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더불어,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임.

종합하면, 방송 출연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영상물을 게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방송 출연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명확하지는 않음. 다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게시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함.
- B 위원: 유사한 사례를 종종 심의했던 것으로 기억함.
- 오진해 전문위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제2021-351회, 제2022-61회 심의에서 본인이 출연한 영상물을 복제·전송한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한 바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게시자가 방송에 출연할 당시 방송의 권리자로부터 영상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37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안전번호 제2023-5037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일본 만화의 불법복제물(번역본)을 감상할 수 있는 '▼▼▼▼'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는 2022. 4. 4.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의하여 구글 검색 결과 제한 요청을 의결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이며, '▼▼▼▼'에서 연결되는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 '▲▲▲' 역시 같은 심의에 의하여 2023. 4. 11.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의결한 바 있는 사이트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50372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총 5건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모두 같은 게시자의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같은 게시자가 같은 OSP에 게시한 같은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은 수개의 게시물이 하나의 안전으로 처리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3-50372호의 채증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의 ‘♥♥♥♥♥’ 카테고리에 같은 성격의 게시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3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37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73건임.
(안전번호 제2023-5037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십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414호~504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안전번호 제2023-5042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50414호~5042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3-50420호의 채증자료를 살펴보면, 제목이 '♣♣ ♣♣♣♣ ♣♣♣ ♣♣♣'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문제집을 의미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채증자료의 원저작물 판매네역을 제시하며)♣♣♣ 국가시험 문제집의 한 종류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제2023-50414호~504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414호~50422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423호~5044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90건임.
(안전번호 제2023-5043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최근 연재분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423호~5044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423호~5044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출판·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25건임.

(안전번호 제2023-5044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방송) '◆◆◆◆◆ ◆◆◆◆◆' 1화를 제공 중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의 25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의 심

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50446호~5124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음악 '나보다 더 사랑해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50504호는 블로그에서 음악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2020. 9. 5.에 발매되어 네이버 바이브, 벅스, 유튜브 뮤직 등에서 스트리밍 또는 mp3 파일 다운이 가능한 음악임.

(영화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51024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를 20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17.에 극장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50446호~5124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50446호~51242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0446호~5124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50367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368호~50371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37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373호~5041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414호~5042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423호~5044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441호~50445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50446호~5124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하병현